

	전자채권·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		전자어음
	전자채권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성격	지급수단 (은행권 공동상품)	지급수단 (은행별 개별상품)	지급수단 (어음법상의 종이어음을 전자화)
발행주체	구매기업	구매기업	구매기업(채무자)
발행방법 (이용채널)	온라인 (인터넷뱅킹)	온라인 (핀뱅킹/인터넷뱅킹)	온라인 (인터넷뱅킹)
금융결제원의 역할	관리기관	정보집중기관	관리기관
거래은행	구매기업과 판매기업의 거래은행이 상이해도 가능	구매기업과 판매기업의 거래은행이 동일	구매기업과 판매기업의 거래은행이 상이해도 가능
채권의 존재형태	금융결제원(관리기관)에 별도 등록	개별 은행이 등록 (금융결제원은 정보집중기관)	금융결제원(관리기관)에 별도 등록
만기(결제일)	발행일로부터 3영업일에서 90일 이내*	발행일로부터 90일 이내 (은행에서 정한 바에 따라 초과 가능)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변제 불능시 처리방법	거래정지처분*** (거래정지일로부터 2년간)		부도처리 및 거래정지
제3자 양도	불가능 (은행에 한해 가능)		가능(배서)
조기현금화 (금융)방식	전자채권담보대출	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전자어음할인
관련법규	민법,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전자채권 최장만기 단계적 축소: ~2019.05.29까지 180일, 2019.05.30부터 150일, 2020.05.30부터 120일, **2021.05.30부터 90일(최종 확정)**

\*\*전자어음 최장만기 단계적 축소: 2018.05.30 부터 6개월, 2019.05.30부터 5개월, 2020.05.30부터 4개월, **2021.05.30부터 3개월(최종 확정)**

\*\*\*거래정지처분: 모든 은행은 거래정지처분 기업의 기존 전자채권·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 거래를 즉시 해지하고, 만 2년간 발행 불허

대부분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으로 발행

전자채권 /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 구매기업이 판매기업을 채권자로 지정, 일정금액을 일정시기에 지급하겠다고 발행하는 전자적 지급수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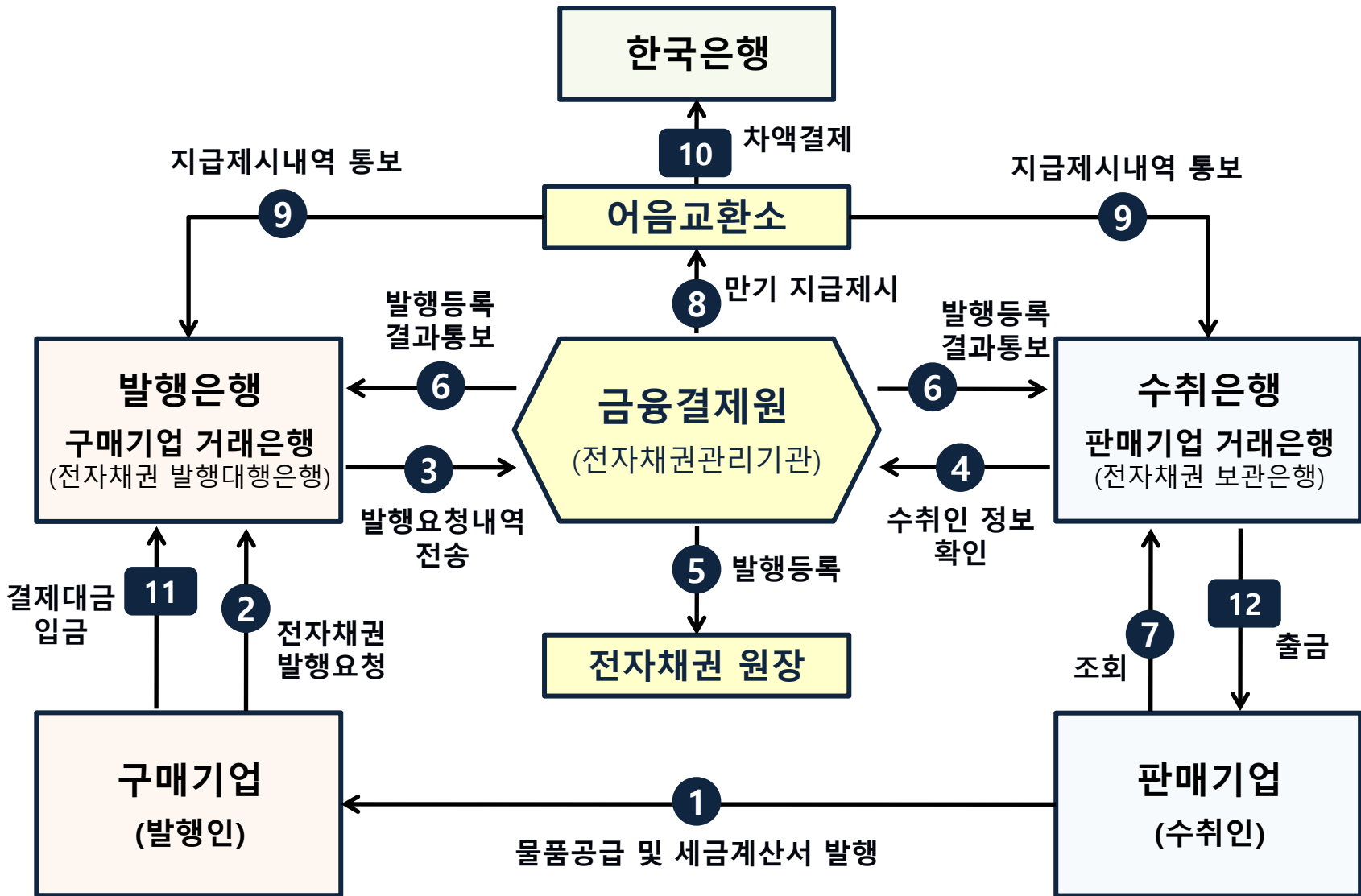
▷ 전자채권 vs.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외상매출채권")

전자채권	[은행 공동상품: 금융결제원 전자채권원장에 등록] 구매기업과 판매기업의 거래은행이 상이해도 발행 가능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은행 개별상품: 은행별 전산원장에 등록] 구매기업과 판매기업이 동일한 은행을 거래할 경우에만 이용 가능

- 판매기업은 전자채권·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해서 구매기업으로부터 만기결제 받거나, 만기 전에 이를 담보로 거래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현금화(B2B금융상품 활용)

- ▷ 발행한도: 구매기업 거래은행에 의해 등록·관리 [발행 남발 방지]
- ▷ 만기: 발행일로부터 90일 이내 (단,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은 은행에서 정한 바에 따라 초과 가능)  
 ※[전자채권 최장만기 단계적 축소] ~2019.05.29까지: 180일 → 2019.05.30~2020.05.29: 150일  
 → 2020.05.30~2021.05.29: 120일 → **2021.05.30~ : 90일 이내**
- ▷ 제3자 양도 불가능 [연쇄부도 가능성 축소] (단, 은행에는 양도 가능하여 전자채권담보대출·전자방식의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로 조기현금화 가능)
- ▷ 전자채권은 구매기업과 판매기업의 거래은행이 상이해도 무방 (단, 판매기업이 전자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사용하려면 은행이 동일해야 함) /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은 구매기업·판매기업의 거래은행이 동일
- ▷ 미결제시 처리방법: 거래정지처분(거래정지일로부터 2년) → 은행은 거래정지처분기업의 기존 전자채권·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을 즉시 해지하고 만기 미도래분을 별도 관리 하며, 2년간 관련 거래 정지

	전자채권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발행	금융결제원 전자채권원장에 등록 (금융결제원이 관리기관 역할)	은행 전산원장에 등록 (금융결제원은 정보집중기관 역할)
만기	발행일로부터 제3영업일 이상 90일 이내	발행일로부터 90일 이내 (단, 은행에서 정한 바에 따라 초과 발행 가능)
	만기가 영업일이 아닌 경우 익영업일을 만기로 함 [최장만기 단계적 축소] ~2019.05.29까지: 180일 → 2019.05.30~2020.05.29: 150일 → 2020.05.30~2021.05.29: 120일 → 2021.05.30~ : 90일 이내 [최장만기는 2021.05.30부터 90일 이내로 최종 확정]	
거래 제한	상거래 결제수단으로만 사용(자금유통 목적 발행 불가)	
거래은행	구매기업과 판매기업의 거래은행이 상이해도 가능	구매기업과 판매기업의 거래은행이 동일
약정체결/발행한도	구매기업이 거래은행("발행은행")과 약정 체결 / 발행은행이 발행한도금액 등록·관리	
제3자 양도	불가능 (단, 은행에는 양도 가능)	
조기현금화 방식	전자채권 담보대출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미결제시 처리방법	거래정지처분(거래정지일로부터 2년간)	
	모든 은행은 거래정지처분 기업의 기존 전자채권·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을 즉시 해지, 만기 미도래분 별도 관리, 2년간 전자채권·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 거래 정지	
관련 법규	[법률·시행령] 전자금융거래법·시행령 / [금융결제원 규약] B2B업무규약·B2B업무규약시행세칙	



\*⑧지급제시: 전자채권관리기관(금융결제원)이 직접 지급제시 → 전자채권 수취인이 개별적으로 지급제시할 필요 없음

## 전자어음

## ● 전자문서로 작성되고 전자어음관리기관(금융결제원)에 등록된 약속어음

▷ 약속어음을 전자화: 어음정보(발행인·수취인·금액·지급기일 등)를 인터넷뱅킹을 통해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하여 발행·수취·할인·배서·결제 등 모든 절차가 온라인에서 이행

## ● 발행기업 및 수취기업 모두 전자어음관리기관에 등록하고 발행·수취하며, 수취기업은 만기결제 받거나 만기 전에 제3자에게 배서양도 또는 금융기관에 할인하여 조기현금화

## [전자어음 발행의무 대상 법인사업자]

## 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대상 주식회사 등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회사

- 주권상장법인(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 포함)
-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500억원 이상
-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
- 다음 사항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 회사 :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120억원 이상 / 직전 사업연도말 부채총액 70억원 이상 /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100억원 이상 / 직전 사업연도 말 종업원 100명 이상(유한회사는 사원 50명 이상)

## ②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10억원 이상인 법인사업자

단, 융통어음은  
종이어음으로만  
발행 가능

▷ **안전성:** 발행~만기결제까지 모든 정보가 전자어음관리기관(금융결제원)의 원장에 전자적으로 저장·관리  
→ 위·변조 불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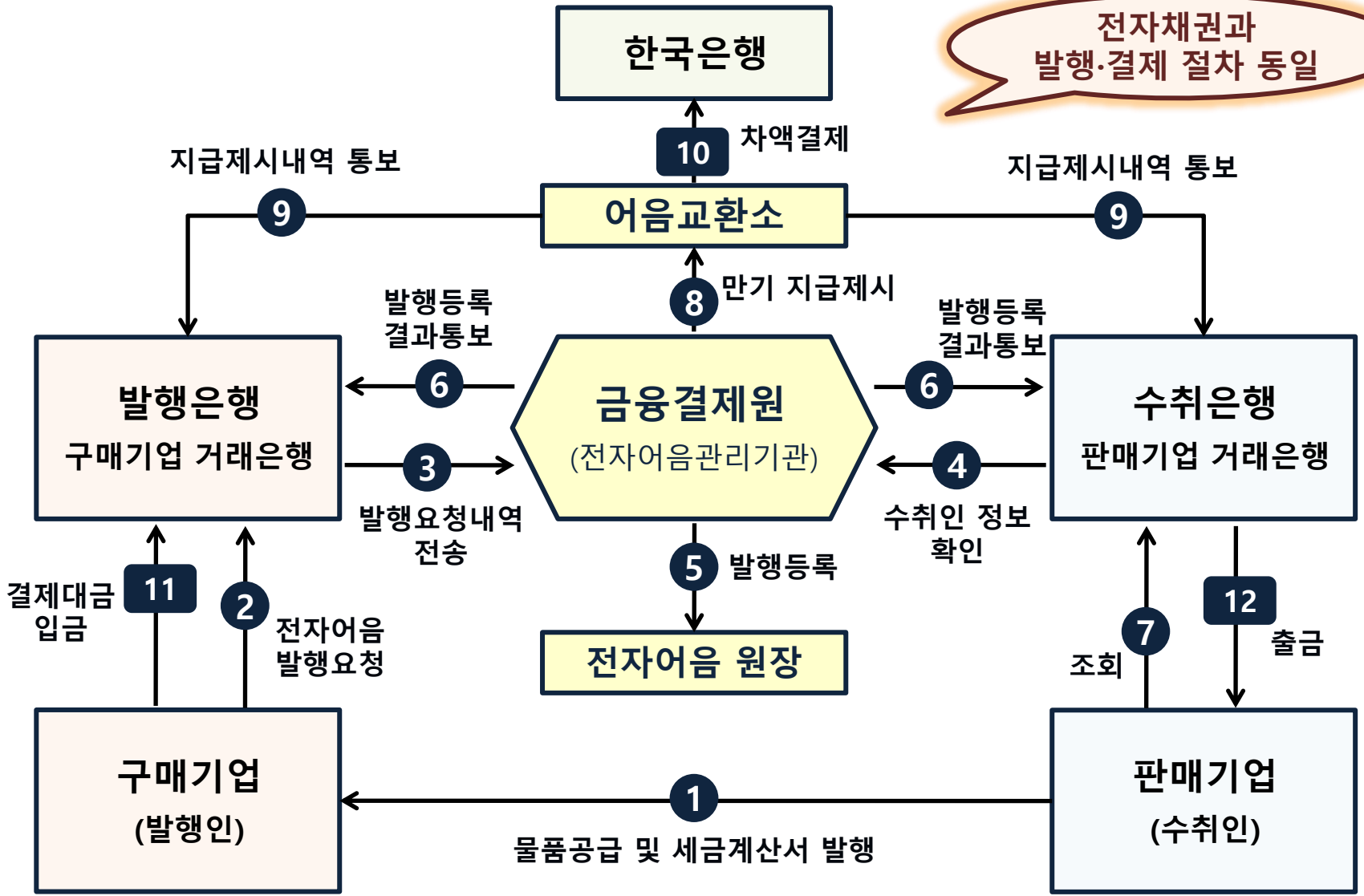
▷ **시간·비용 절감:** 모든 서비스가 온라인상에서 전자적으로 진행 (종이어음의 발행·관리·교환 절차 등 배제) / 전자어음관리기관(금융결제원)이 만기일에 직접 지급제시·교환결제 실행

▷ **만기:**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전자어음 최장만기 단계적 축소] ~2018.05.29까지: 1년 → 2018.05.30~2019.05.29: 6개월 → 2019.05.30~2020.05.29: 5개월 → 2020.05.30~2021.05.29: 4개월 → **2021.05.30~: 3개월**

▷ **분할배서:** 전자어음을 발행받아 최초로 배서하는 자에 한해 총 5회 미만으로 분할하여 배서 가능 (어음관계가 지나치게 복잡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가능 → 2차 배서인부터는 분할 불가능)

전자채권과 발행·결제 절차 동일



\*⑧지급제시: 전자어음관리기관(금융결제원)이 직접 지급제시 → 전자어음 최종수취인이 개별적으로 지급제시할 필요 없음

	종이어음	전자어음
존재형태	종이 서면	전자문서
종류	약속어음, 환어음	약속어음 (환어음 제외)
적용법률	어음법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어음법
발행방법	제한 없음 (은행에서 어음용지를 교부받아 발행)	전자어음관리기관(금융결제원)에 등록
		신용상태에 따라 등록거부 및 연간 총 발행금액 제한 가능
발행·배서방법	기명날인 또는 서명	전자문서에 공인인증 서명
배서 제한	제한 없음	총배서횟수 20회로 제한
분할배서	불가	가능 (단, 최초 배서자에 한해 총 5회 미만으로 분할하여 배서 가능)
만기 제한	제한 없음	발행일로부터 3개월*
백지어음	가능	금지
관리기관	없음	전자어음관리기관(금융결제원)

\*전자어음 최장 만기 단계적 축소: 2018.05.30 부터 6개월 → 2019.05.30부터 5개월 → 2020.05.30부터 4개월  
→ 2021.05.30부터 3개월 이내(최종 확정)

구분		내용	비고
어음제도 개선	전자어음 의무발행 확대 → 종이어음 자연감소·폐지	[1단계] 자산 10억원 이상 법인 → 자산 5억원 이상 법인 [2단계] 모든 법인사업자로 확대 / 종이어음 폐지	2021년 중 전자어음법시행령 개정  2023년 전자어음법 개정
	전자어음 배서횟수 축소	현행 최대 배서횟수 20회 → 5회로 축소	2023년 전자어음법 개정
	전자어음 만기 단축	대기업 발행 전자어음: 현행 최장만기 3개월 → 2개월로 추가단축	2022년 전자어음법 개정
	기타	대기업·중견기업 발행어음 지급보증 의무화 → 어음발행 억제 및 현금결제 확대	
	매출채권보험 확대	신보의 매출채권보험 인수규모 확대(→20조원 이상)	
어음대체수단 활성화	구매자금융 지원 강화	신보·기보 구매자금융* 보증 확대(→7조원) [*구매자금융: 구매자가 용자를 받아 판매자에게 납품대금을 결제하는 금융]	
	상환청구권 없는 매출채권팩토링 도입	정책금융기관에서 기관별 특성에 맞는 차별적 팩토링 상품 운영 → 민간으로의 확산 유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상대적 신용도 낮은 중소기업 대상 매출채권 팩토링 공급 [신용보증기금] 중견기업과 일반 중소기업 등을 중심으로 공급 [기술보증기금] 신용도는 낮지만 기술·사업성이 우수한 신기술사업자를 중심으로 팩토링 공급	

※[보도자료] '어음제도 개편 및 혁신금융 활성화' 발표\_중소벤처기업부\_2021.06.18

전자어음

※[보도자료] '어음제도 개편 및 혁신금융 활성화' 발표\_중소벤처기업부\_2021.06.18

● 전자문서로 작성되고 전자어음관리기관(금융결제원)에 등록된 약속어음

▷ 약속어음을 전자화: 어음정보(발행인·수취인·금액·지급기일 등)를 인터넷뱅킹을 통해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하여 발행·수취·할인·배서·결제 등 모든 절차가 온라인에서 이행

● 발행기업 및 수취기업 모두 전자어음관리기관에 등록하고 발행·수취하며, 수취기업은 만기결제 받거나 만기 전에 제3자에게 배서양도 또는 금융기관에 할인하여 조기현금화

[전자어음 발행의무 대상 법인사업자]

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대상 주식회사 등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회사

- 주권상장법인(해당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 500억원 이상)
-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 500억원 이상
-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500억원 이상
- 다음 사항 중 2개 이상에 해당 (연도말 부채총액 70억원 이상 /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100억원 이상 / 직전 사업연도 말 종업원 100명 이상(유한회사는 사원 50명 이상))

1 전자어음 의무발행 확대 & 종이어음 폐지

[1단계] 자산 5억원 이상 법인 (2021년 중)

[2단계] 모든 법인사업자로 확대 / 종이어음 폐지 (2023년)

②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10억원 이상인 법인사업자

▷ 안전성: 발행~만기결제까지 모든 정보가 전자어음관리기관(금융결제원)의 원장에 전자적으로 저장·관리  
→ 위·변조 불가능

▷ 시간·비용 절감: 모든 서비스가 온라인으로 가능  
▷ 대기기업 발행 전자어음 최장만기 축소 : 현행 최장만기 3개월 → 2개월로 단축 (2022년) (절차 등 배제) /

▷ 만기: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전자어음 최장만기 단계적 축소] ~2018.05.29까지:

2019.05.30~2020.05.29: 5개월 → 2020.05.30~2021.05.29: 3개월

3 전자어음 배서횟수 축소

: 현행 최대 배서횟수 20회 → 5회로 축소 (2023년)

▷ 분할배서: 전자어음을 발행받아 최초로 배서하는 시점부터 배서할 수 있음 (배서인부터는 분할 배서 불가) → 배서인부터는 분할 불가능  
계가 지나치게 복잡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가능 → 2차 배서인부터는 분할 불가능)